

● ● ● ●
경/찰/차/벽

왜 위헌·위법인가?



2015년 4월 18일(토)
세월호참사 1주기
범국민대회가 열린
광화문 광장 일대에 6종의
경찰 차벽이 4월 16일에
이어 등장했습니다.

'질서유지를 위해 차벽
설치했다'는 경찰...

그러나 경찰 전면차단 차벽은 위험!



2009년 5월 노전대통령 서거 후서울광장을 둘러싼 차벽을 기억하시나요?

2011년 6월, 헌법재판소

"평화로운 집회·시위를 막고 집회참가자들을
주위와 고립시키는 경찰의 차벽 설치가 위헌임을 선언"

과잉금지의 원칙 위반, 헌법재판관 **7:2로 위헌!**

경찰 차벽이 합헌이라면?

**첫째,
임박한 위험이 명백·현존해야 하고**

**둘째,
차벽을 설치하는 것 이외에는
효과적으로 위험을 차단할 수 없을 정도의
위험이 커야 한다**

4월 16일은 헌화를 위한 추모행렬이었고,

4월 18일은 경복궁 누각 앞에 고립된
유가족을 만나러 가는 상황으로

위 두 요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경찰 차벽은 경찰직무집행법 위반 ⇒ 위법!

**"경찰버스를 '일반적인 사용법과 달리'
차벽으로 사용하는 것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위반이다.**

**법령상으로도 경찰버스를 이용해
사람의 통행을 가로막거나 집회현장을 봉쇄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경찰장비가 아닌 것이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폭력집회 때문에 차벽설치?

아니아니!

차벽은 미리 치밀하게 준비된 것



"트럭 18대 / 차량 470여 대
전경 172개 부대, 1만 3,700여명 배치"

출처 : 416연대가 4월 20일 공개한 경찰의 차벽 준비 문서 (시민제보)

광화문 광장으로 가는 모든 길을 완전 봉쇄



2015. 4. 18. 종로구 인사동 북측입구입니다. 관광객들의 통행마저 막았습니다.

불법행위로 시민불편 초래하는 것은 경찰입니다.

게다가 캡사이신과 물대포로 과잉 대응!



경찰은 항의하는 시민들에게 캡사이신을
난사하고 물대포를 '조준'하여 살수했습니다.
이 역시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한 것입니다.

경찰은 똑바로 보세요

1. 통행을 완전 봉쇄하는
차벽 설치하는 **위헌**입니다

2. 캡사이신과 물대포를
남용한 것 역시
위법 행위입니다

추모마저 위헌·위법으로 가로막는 경찰!
당신들은 무엇을 지키고 있습니까?

2015. 4. 20

 참여연대